

## 식품의 영양표시제도 정착을 위한 기초조사(I): 소비자 인식 연구\*

박혜련 · 민영희

명지대학교 이과대학 식품영양학과  
(1995년 4월 11일 접수)

## A Basic Research for the Adoption and Implementation of Nutrition Labeling: With a Reference to the Consumer Awareness

Hae-Ryun Park and Young-Hee Min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Myungji University, Yongin, Korea

(Received April 11, 1995)

### Abstract

Consumer awareness of current food labeling system and new nutrition labeling system which the government considers to adopt widely was assessed, from May to June in 1994, for 423 adults living in Seoul. Being highly conscious of food safety, they thought the current food label did not provide sufficient information. Dissatisfaction with the current system was shown higher in the female, young, or unmarried strata. The need for nutrition labeling system was widely recognized by 82% of total respondents regardless of sex, level of education, monthly income, and marital status. Although some expressed worries about proper management of the system, most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 system would benefit them after all. In this connection, 59% of the respondents showed willingness to accept a price increase to be entailed by nutrition labeling. Nutrition informations that, they thought, should be covered were: calorie>minerals>cholesterol>protein>vitamins>fat>sodium. Additional labeling informations they called for were nutrient contents>RDA percentage>specific statement on reinforced or eliminated nutrients.

### I. 서 론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생활수준의 향상과 식생활패턴 및 식습관의 변화로 인해 가공식품과 동물성 식품의 섭취가 꾸준히 늘고 있고<sup>1)</sup> 각종 만성퇴행성 질환이 건강의 큰 위협이 되고 있다<sup>2)</sup>. 또한 영양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일반 소비자들은 다양한 가공식품 중에 함유되어 있는 영양성분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지 않고서는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어려운 실정이 되었다. 이제는 소비자들이 식품의 양보다는 질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특수한 환경에 처한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식품과 사용해서는 안되는 식품의 구별을 위한 요구가 증대 되고 있으며, 수입자유화 정책으로 인하여 구미각국의

각종 식품을 빈번하게 대하게 되는 요즈음의 현실을 감안할 때 영양표시제도의 도입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가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었다.

영양성분표시, 보다 넓게 식품표시제도란 식품에 관한 각종 정보, 즉 그것의 가격, 품질 및 성분, 성능 및 효력, 제조일자 및 유효기간, 사용방법, 영양가치 등에 관한 정보를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에 표기하도록 명령함으로써 소비자가 쉽게 경쟁사 제품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를 말한다<sup>3)</sup>.

영양표시제도는 소비자에게는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보다 영양가있고 안전한 식품을 고르도록 도와 주며<sup>4)</sup>, 국민의 영양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주고<sup>5)</sup>, 영양지식을 높혀 식생활의 질이 향상되며<sup>6)</sup>, 기업의 측

\*이 논문은 1993년도 한국 학술진흥재단의 공모과제 연구비의 일부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면에서 볼 때는 제품의 질을 높이고, 기업 이미지를 향상시켜 매출을 늘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며<sup>10,11)</sup>, 국민영양교육 도구으로써 좋은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sup>12)</sup>.

1975년에 이 제도를 시행한 미국의 경우 당시 식품 제조회사들이 자발적으로 가공식품이나 포장된 식품의 serving size에 따른 열량,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Vit. A, Vit.C, Vit.B1, Vit.B2, Niacin, Ca, Fe 함량을 표기하도록 유도하였으며, 이중 단백질과 7가지 비타민 무기질은 일일권장량 RDA(Recommended Daily Allowance)에 대한 백분율도 함께 표기하도록 하였고, 식품에 특별한 영양소를 첨가했다고 주장할 때는 이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규정하며, 모방식품이나 콜레스테롤, 지방산에 대한 표기도 함께 허용하였다<sup>13)</sup>.

1987년에는 43%의 가공식품이, 1988년에는 61%의 가공식품이 영양성분표시를 시행하게 되었으며<sup>14)</sup> 현재에는 식품의약품관리청(FDA: Food Drug Administration)이 새로운 식품표시를 위한 규정을 작성해 1993년 1월 6일 26개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법안을 공포, 1993년 5월 8일부터는 건강관련 강조표시 규정이, 1994년 5월 8일부터는 그의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sup>15-17)</sup>.

새로운 영양성분표시 규정내용의 특징은 모든 가공식품에 영양표시를 강제화하고, Ca과 골다공증, Na과 고혈압, 지방과 심혈관질환, 지방과 암에 대하여 건강관련 강조표시를 역사상 처음으로 인정했으며, 영양정보를 제공하는 기본단위인 Serving size를 국민이 통상 섭취하는 1회 섭취량에 근거, 합리적이고 표준화된 것으로 조정했다는 것이다. 또 RDA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건강에 중요한 총지방,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콜레스테롤, 탄수화물, 식이섬유소, Na, K 등의 영양소를 'Percent of Daily Value'로 표현할 수 있게 하였다.

또 일본의 경우에는 영양성분표시 관련 규정으로 판매하려는 식품에 특정영양성분이 강화되었거나 특별용도(유아용, 환자용)에 적합하다고 표시할 경우 보사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특수영양식품표시제도와 가공식품의 영양성분을 보증하는 JSD 마크를 건강영양식품협회에서 발행하는 가공식품영양표시제도가 있으며 지난해에는 "영양표시검토위원회"를 설치하기도 했다<sup>14)</sup>. 또 EC 등 다른 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규제가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sup>18,19)</sup>.

그러나 현 우리나라 식품위생법 표시기준 항목은 제품명, 첨가물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영업허가번호, 중량 및 함량, 보관상의 주의할 점, 보존기준, 유통기한 등으로 식품의 안정성과 관련된 사항에 치우쳐 있다. 영양정보표시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인스턴트식품 및 유가공품 중 조제우유와 강화우유에 대하여 제품의 단위중량(용량)당 포함된

열량 및 영양분을 표시할 수 있게 하였고, 또 영양분 또는 영양성분이 함유되었음을 표시할 경우 그 표시의 가까운 곳에 당해 성분의 함량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별항목으로 우유에서의 '저'지방이나 콜라에서의 "라이트" 등 몇몇 용어 기준만이 설정, 허가되고 있다<sup>20,21)</sup>.

포장된 원료 농산물의 경우 품목별로 세부적인 표시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무공해식품', '완전식품' 등의 표현이 제한없이 사용되고 있고 가공식품의 경우 '풍부', '급원', '강화', '저지방', '저염' 등의 표현이 소비자의 건강보다는 다른 제품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차원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영양표시를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극히 일부 식품의 경우에도 권장량에 대한 비율보다는 몇몇 영양소의 함량표시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sup>14)</sup>.

따라서 국내 소비자는 가공식품 속에 특정영양성분이 얼마만큼 들어 있는지, 일일 권장량의 몇 퍼센트 정도인지 파악하지 못한 채 제품을 구입하고 있고, 참고할 수 있는 영양정보도 거의 없는 실정인데 반해 미국에서 1994년 5월부터 미국에서 생산, 판매되는 모든 식품은 물론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에도 영양표시를 의무화함에 따라 미국으로 수출되는 국내 일부 식품은 수출품에 한해 이미 영양표시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 이므로 이에 대한 관계법규의 개정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sup>22-24)</sup>.

본 연구는 일반 소비자,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기업체, 식품위생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한 영양표시제도 정착을 위한 기초조사로 진행되었고, 본 논문은 그 일부로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여 영양표시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및 요구도, 현 식품표시제도에 대한 만족도, 영양표시제도 시행 방법, 실시될 때 기대되는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효과 등에 대하여 응답자의 사회경제적인 여건에 따라 분석하여 차후 관련부처와 기업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정부규제의 기초자료가 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의 인식을 확산시켜 제도 정착시기를 앞당기고 영양 교육의 저변확대를 통한 국민건강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 II. 연구 방법

### 1. 조사 대상 및 기간

본 조사는 서울 시내 강남구, 중랑구, 서대문구, 마포구,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방문 및 협조가 가능한 20세 이상의 일반소비자 600명을 대상으로 모 학습지 판매회사의 협조를 얻어 1994년 5월 10일부터 6월 30일(50일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1994년 2월 25일부터 3월

5일까지 일반 소비자 5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본 조사는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부하고 설명한 후 조사대상자가 직접 기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여 454부를 회수(회수율 76%)하였으나 이 중 불완전한 응답 31부를 제외한 423부를 통계처리에 이용하였다.

## 2. 조사도구 및 내용

본 연구의 조사도구로는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설문 문항은 미국 FDA에서 시행한 소비자 인식조사 설문지를 참고로 하여 연구자가 개발한 후 Focus group interview 및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질문의 난이도 및 기타 예상치 못했던 설문내용의 미비점을 보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예비조사 및 Focus group interview 결과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영양표시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아주 낮고 대부분의 경우에 현재 실시되고 있는 식품표시제도와 앞으로 실시하게 될 영양표시제도에 대한 구별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설문지 앞 부분에 현행 식품표시의 예와 일부 식품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영양표시의 예를 제시하여 응답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경제사회적 여건, 현 식품표시의 이용실태 및 만족도, 영양표시에 대한 인지정도, 영양표시제도 시행시 요구사항 및 시행시 기대되는 효과에 관한 조사로 총 3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현 식품표시에 대한 만족도 및 영양표시제도 시행시에 기대되는 효과에 관하여는 5-point Likert Scale을 이용하여 예상되는 기대효과 및 만족도에 관한 문항을 제시한 후 전적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5점, 분명치 않은 경우에는 3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1점을 주는 방법으로 점수화하여 자료분석에 이용하였다.

## 3. 조사자료의 처리방법

통계처리는 SPSS PC<sup>+</su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대하여는 단순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식품표시의 인지정도, 읽는 이유, 영양표시의 시행에 대한 요구도는 교차표를 이용하여 결혼 여부, 직업유무, 교육정도 등의 사회경제적 여건과의 통계적 연관성을 파악하였다. 대상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직업이 있는 경우에 포함시켰다. 현 식품표시에 대한 만족도 및 영양표시제도 시행시 예상되는 기대효과는 점수로 환산한 후 t-test 및 F-test를 이용하여 경제, 사회적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였다.

## III. 연구결과 및 고찰

### 1. 조사 대상자의 사회경제적 여건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회경제적 여건으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수입, 직업유무, 결혼여부 등의 내용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 2. 현 식품표시 이용실태

#### 1) 식품구입 시 식품표시 이용정도

Table 2에서 보듯이 식품표시 인지정도는 식품을 구입할 때 거의 안보는 편이 11.6%, 대체로 안보는 편이 19.2%, 대체로 보는 편이 55.7%, 잘 때마다 보는 편이

Table 1. Socioeconomic status of the consumers

Factors	n <sup>a)</sup>	%
Sex		
Male	84	20.0
Female	339	80.0
Age		
≤29 Years	231	54.8
30~39 Years	131	31.0
40~49 Years	37	9.7
≥50 Year	23	5.5
Formal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Graduate or less	14	3.2
High School Graduate	205	48.4
Two-Year College Graduate	46	11.0
College Graduate	135	31.8
Graduate School or More	16	3.9
Others	3	1.7
Monthly Income		
Under 500,000 Won	74	17.6
500,000~1,000,000 Won	122	26.9
1,000,000~1,500,000 Won	110	26.0
1,500,000~2,000,000 Won	66	15.5
Over 2,000,000 Won	28	8.7
Others	21	5.3
Occupation		
Yes	202	47.6
No	221	52.4
Marital Status		
Not Married	209	49.3
Married	214	50.7

<sup>a)</sup>Reported cases are only for those who answered the questions.

Table 2. Frequency of Paying Attention to Food Labeling

n(%)

Factors	Never	Rarely	Mostly	Always	
<b>Sex</b>					
M	17(21.0)	23(28.4)	32(39.5)	9(11.1)	$\chi^2 = 16.31^{***}$ DF <sup>b</sup> = 3
F	30( 9.3)	57(17.7)	193(59.9)	42(13.0)	
<b>Age</b>					
≤29	31(13.3)	45(19.4)	134(57.8)	22( 9.5)	$\chi^2 = 11.67$ DF = 9
30~39	13( 9.9)	27(20.6)	67(51.1)	24(18.3)	
40~49	5(12.2)	5(12.2)	24(58.5)	7(17.1)	N.S
≥50	4(23.5)	9(52.9)	4(23.5)	3(15.8)	
<b>Formal Education</b>					
≤High School Graduate	30(14.3)	41(19.5)	112(53.3)	27(12.9)	$\chi^2 = 2.22$ DF = 3 N.S
>College Graduate	18( 9.5)	39(20.5)	106(55.8)	27(14.2)	
<b>Monthly Income (Won)</b>					
<1,000,000	25(14.4)	32(18.4)	96(55.2)	21(12.1)	$\chi^2 = 1.01$ DF = 3 N.S
≥1,000,000	23(11.7)	37(18.9)	107(54.6)	29(14.8)	
<b>Occupation</b>					
Yes	32(16.2)	37(18.8)	98(49.7)	30(15.2)	$\chi^2 = 12.63$ DF = 3 N.S.
No	14( 6.5)	42(19.5)	134(62.3)	25(11.6)	
<b>Marital Status</b>					
Married	30(14.6)	43(21.0)	113(55.1)	19( 9.3)	$\chi^2 = 8.20^*$ DF = 3
Not Married	19( 9.1)	37(17.7)	117(57.0)	36(17.2)	
Total	49(11.6)	81(19.2)	235(55.7)	58(13.5)	423

a: chi-square, b: degree freedom, \* $p < 0.05$ , \*\*\* $p < 0.001$

13.5%로서 69.2%가 식품구입시 식품표시를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royer는<sup>25)</sup> 젊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고학력일 수록 식품표시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고, 또 Crawford Worsley<sup>26)</sup>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식품표시 내용을 더 많이 이용하고, 새롭고 익숙하지 않은 식품표시를 더 많이 읽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연령, 수입, 학력, 직업유무에 따라서는 유의적 차이가 없게 나타났으나 남성보다는 여성이( $p < 0.05$ ), 미혼인 경우보다는 기혼자가( $p < 0.001$ ) 식품구입 시 식품표시를 더 많이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73.9%의 직업이 없는 소비자가 식품표시를 확인하는 반면 직업을 가진 경우는 64.9%만이 식품표시를 확인한다고 대답하여 직업을 가지지 않은 소비자가 식품표시를 확인하는 경향이 더 많아 보였다( $p = 0.055$ ). 특히 직업을 가진 경우는 16.2%가 거의 안보는 편이라고 대답하여 시간상의 제약요인과

관계가 있는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 식품구입 시 식품표시사항을 읽는 이유

Table 3에 제시된대로 식품을 구입할 때 식품표시사항을 읽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안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가 58.1%로 가장 많았고, 영양정보를 얻기 위해서가 21.2%, 메뉴에 적당한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가 11.4%, 새로운 식품을 구입하기 위해서가 3.5%, 타제품과 비교하기 위해서가 2.8% 순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이 식품을 구입할 때의 가장 큰 관심사는 영양정보에 관한 것보다는 식품의 안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우리나라민의 영양표시제도에 대한 인식이 낮고, 현재 영양표시제도가 극히 일부 제품에만 자발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의 강조구문(health claim)만이 허용되고 있는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1970년대 초에 미국에서 행해진 한 설문 조사<sup>8)</sup>의

Table 3. Reasons for Paying Attention to Food Labeling

n(%)

Factors	Reasons	1 <sup>a)</sup>	2	3	4	5	6	
<b>Sex</b>								
M		2(2.7)	12(16.7)	39(54.2)	2(2.8)	12(16.7)	5(6.9)	$\chi^2=9.22$
F		9(2.9)	33(10.8)	178(58.2)	11(3.6)	70(22.9)	5(1.6)	DF=5
<b>Age</b>								
<30		9(4.2)	25(11.5)	112(51.9)	7(3.2)	57(26.4)	6(2.8)	$\chi^2=12.47^*$
≥30		2(1.1)	20(11.1)	117(65.4)	7(3.9)	27(15.1)	6(3.4)	DF=5
<b>Formal Education</b>								
Under 12 Yrs		2(1.0)	27(14.1)	117(61.3)	9(4.7)	30(15.7)	6(3.1)	$\chi^2=12.94^*$
Over 12 Yrs		7(3.8)	16(8.7)	100(54.3)	5(2.7)	50(27.2)	6(3.3)	DF=5
<b>Monthly Income (Won)</b>								
<1,000,000		4(2.4)	23(14.0)	96(58.5)	7(4.3)	30(18.3)	4(2.4)	$\chi^2=3.50$
≥1,000,000		6(3.2)	18( 9.7)	107(57.8)	5(2.7)	42(22.7)	7(3.8)	DF=50
<b>Occupation</b>								
Yes		2(1.1)	24(13.1)	102(55.7)	8(4.4)	39(21.3)	8(4.4)	$\chi^2=7.69$
No		9(4.4)	19( 9.3)	123(60.0)	6(2.9)	44(21.5)	4(1.9)	DF=5
<b>Marital Status</b>								
Not Married		7(3.7)	19(10.0)	96(50.5)	6(3.1)	56(29.5)	6(3.2)	$\chi^2=16.69^{**}$
Married		4(2.0)	25(12.6)	129(64.8)	8(4.0)	27(13.6)	6(3.0)	DF=5
<b>Total</b>		11(2.8)	45(11.4)	230(58.1)	14(3.5)	84(21.2)	12(3.0)	396

\* $p < 0.05$ , \*\* $p < 0.01$ 

<sup>a)</sup>1: To compare to other products, 2: To choose appropriate products for menu, 3: To be sure for food safety, 4: When buy a new products, 5: To get nutrition information

경우 소비자들이 식품표시가 유용하다고 생각했으며 응답자 중 79%가 요리에 적당한 것을 선택할 때, 75%가 새로 개발된 식품의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데, 64%는 균형 잡힌 식사를 준비하는데 유용하게 이용했다고 답하였고 Geiger<sup>26)</sup>는 소비자들이 전체적으로 제품의 영양 프로필을 파악하기보다는 Na이나 콜레스테롤과 같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구성성분을 피하는데 식품표시를 이용한다고 보고하여 본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많은 차이를 볼 수 있다.

연령, 결혼여부, 학력에 따라 식품표시를 읽는 이유가 유의적으로 차이가 있었는데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저학력층인 고졸 이하의 학력자에 비해 영양정보를 얻기 위해서 식품표시를 읽고 있다는 응답이 많은 반면 고졸 이하의 학력자의 경우에는 안정성 여부를 확인하거나 메뉴에 적당한 것을 선택하기 위하여라는 대답이 유의적으로 많았다( $p < 0.05$ ), 3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 안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식품표시를 읽는 경향이 더 높는데 반해 30세 이하의 계층에서는 영양정보를 얻기 위해 식품표시를 읽는

경우가 많았고( $p < 0.05$ ) 미혼인 경우에는 영양정보를 얻기 위한 응답이 기혼에 비해 많은 반면 기혼자들은 미혼자들에 비해 안정성의 확인을 위해 식품표시를 보는 경향이 많았다( $p < 0.01$ ).

### 3) 식품구입 시 식품표시 확인사항

식품구입할 때 가장 많이 보는 식품표시 확인사항을 3가지만 고르도록 하였을 때 유통기한(82.7%)의 확인 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식품회사명(41.6%) > 가격(40.4%) > 주성분(29.3%) > 보관방법(15.6%) > 첨가물(15.1%) > 조리법(10.2%) > 열량, 원산지(8.3%) > 중량(7.6%) > 품질검사 및 합격표시(5.4%) > 주의할 점(5.2%) > 가공처리(1.7%) > 반품 및 교환장소의 순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food hygiene에 대한<sup>27)</sup> 소비자 조사에서는 포장상태와 유통기한의 확인도가 높고, 식품첨가물과 주성분의 확인도는 낮았다고 보고하였고, 또 안의<sup>28)</sup> 연구에서는 가공식품을 구입할 때 가장 불만족스러운 점이 제조일자의 표시가 없음(44.7%)을 들었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유통기한이 가장 확인도가

	1 <sup>a)</sup>	2	3	4	5
Offer the desired information			2.93 <sup>b)</sup>		
Have confidence in the information			3.03		
Be helpful for food choice			3.08		
Identify the product characteristics			3.21		
Understand the label			3.28		
Applicable to diet planning			3.38		

a): 1. Strongly disagree      2. Disagree  
 3. Uncertain   4. Agree   5. Strongly agree

b): Average value calculated from 5-point Likert Scale

Fig. 1. Satisfaction for the current food labeling system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들의 관심이 식품의 안정성 확인에 쏠려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열량을 확인하는 경우가 지극히 낮은 것은 영양표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부족하고 실제로 영양표시가 극히 일부품목에만 행해지고 있는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 결과는 앞서 인용한<sup>26)</sup> 미국의 소비자들이 식품의 구성 성분 중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확인 한다는 연구결과와는 대조적이었다.

4) 현행 식품표시사항에 대한 만족도

현행 식품표시사항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알고 싶은 사항이다’, ‘기재된 사항을 믿는다’, ‘식품 선택에 참고가 된다’, ‘제품의 특성이 파악된다’, ‘표시 내용을 이해한다’, ‘읽고 난 후 적용이 된다’의 6가지 문항을 제시하여 5가지 단계 Likert Scale(1: 전혀 그렇지 않다, 2: 대체로 그렇지 않다, 3: 그저 그렇다, 4: 대체로 그렇다, 5: 매우 그렇다)을 이용하여 점수화한 후 분석한 결과 소비자들의 만족도는 평균 3.15/5점으로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1에서 보듯이 문항별로는 「읽고 난 후 적용이 된다」가 3.38점으로 가장 높았고, 「표시내용을 이해한다」가 3.28점, 「현 식품표시로 제품특성이 파악된다」가 3.21점, 「식품선택에 참고가 된다」가 3.08점, 「기재사항을 믿는다」가 3.03점, 「알고 싶은 사항이다」는 2.93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상의 조사결과로 볼 때 현행의 식품표시제도는 소비자가 알고 싶은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제공된 정보 자체도 소비자는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소비자들은 제공된 정보를 읽고 식생활에 적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사회, 경제적 여건에 따라 현행 식품표시제도에 대한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t-test와 F-test를 이용하여  $p=0.05$  수준에서 검정하였고 그 결과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학력이 높을수록( $p<0.05$ ) 그리고 직업이 없는 경우( $p<0.05$ )에 표시 내용을 이해하는 정도가 더 높았으며( $p<0.05$ ), 30, 40대의 경우가 적용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p<0.05$ ), 미혼자보다는 기혼자가( $p<0.01$ ) 표시내용을 더 많이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소비자인 경우( $p<0.05$ )에, 미혼일수록( $p<0.01$ ), 20대와 40대 연령층에서( $p<0.05$ ) 알고 싶은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 미혼보다는 기혼인 경우가 식품표시제도를 이용하여 제품특성을 파악하여( $p<0.05$ ) 식품선택에 참고가 된다고 생각하는( $p<0.001$ ) 것으로 나타났다.

FDA의 소비자연구<sup>29)</sup>는 고학력자일수록 식품표시에 있어서 식품자체 영양성분함량은 믿는 경향이 있으나 특정영양소나 식품성분이 해당제품에 적게, 혹은 많이 들어있음을 강조하는 “무콜레스테롤”이라든지 “특정질병의 예방, 치료식품”이라는 강조문구는 믿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나 본 조사 결과는 표기된 내용을 이해하는 정도 외에는 학력에 따라 만족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결혼한, 직업이 없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계층의 소비자일수록 표시내용을 이해하고 식생활에 적용하는 경향이 높으나 젊은 여성 소비자 층에서는 더 많은, 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3. 영양표시제도에 대한 인식

영양표시를 본 경험,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영양성분, 전면적인 영양표시제도 시행의 필요성, 영양표시의 미비로 인한 피해 경험, 시행 시 원하는 표기방법과 포

**Table 4.** Consumer satisfaction for the current food labeling system

Factors	1 <sup>b)</sup>	2	3	4	5	6
<b>Sex</b>						
M	3.19±0.85 <sup>a)</sup>	3.20±0.77	3.08±0.77	3.01±0.84	3.01±0.76	3.20±0.72
F	3.28±0.80	3.35±0.82	2.87±0.89	3.02±0.86	3.07±0.72	3.21±0.69
t-value	0.88	1.52	1.96*	0.09	0.59	0.08
<b>Age</b>						
≤29	3.33±0.77	3.22±0.79	2.83±0.84	3.03±0.84	2.99±0.70	3.17±0.68
30~39	3.19±0.85	3.50±0.77	3.09±0.92	3.03±0.87	3.19±0.74	3.25±0.67
40~49	3.38±0.84	3.47±0.89	2.85±0.80	2.84±0.93	3.26±0.82	3.21±0.82
≥50	3.38±0.91	3.26±0.90	3.15±0.89	3.05±0.67	3.05±0.70	3.52±0.69
F-value	2.0930	3.5030*	2.9807*	1.3065	2.7378	1.6576
<b>Formal education level</b>						
Under 12 Yrs	3.17±0.83	3.36±0.83	2.95±0.91	3.00±0.90	3.10±0.77	3.20±0.68
Over 12 Yrs	3.39±0.81	3.33±0.79	2.90±0.82	3.07±0.79	3.07±0.79	3.24±0.70
t-value	2.66*	0.39	0.54	0.923	0.38	0.52
<b>Monthly Income (Won)</b>						
<1 Million	3.23±0.80	3.32±0.81	2.97±0.91	3.02±0.84	3.09±0.75	3.22±0.70
≥1 Million	3.35±0.82	3.34±0.80	2.89±0.88	3.02±0.82	3.12±0.69	3.21±0.70
t-value	1.35	0.23	0.79	0.04	0.47	0.19
<b>Occupation</b>						
Yes	3.17±0.82	3.38±0.78	3.01±0.83	3.04±0.87	3.11±0.69	3.20±0.67
No	3.39±0.81	3.27±0.83	2.86±0.90	3.02±0.85	3.06±0.77	3.22±0.72
t-value	2.62*	1.38	1.69	0.21	0.71	0.34
<b>Marital Status</b>						
Not Married	3.33±0.76	3.22±0.78	2.79±0.84	3.01±0.88	2.94±0.72	3.14±0.70
Married	3.22±0.87	3.44±0.83	3.05±0.89	3.04±0.82	3.19±0.73	3.28±0.68
t-value	1.34	2.73**	3.04**	0.34	3.41***	2.09*

<sup>a)</sup> mean±S.D (Based on the Likert Scale (1; Strongly disagree, 2; Disagree, 3; Uncertain, 4; Agree, 5; Strongly agree))

<sup>b)</sup> 1. Can understand the label 2. Applicable to diet with the labeling 3. Offer the desired information 4. Have confidence in the label 5. Be helpful for food choice 6. Identify the product characteristics

\* $p < 0.05$ , \*\* $p < 0.01$ , \*\*\* $p < 0.001$

함되어야 할 영양소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를 Table 5에 제시하였다.

#### 1) 시판되는 식품 중 영양표시를 본 경험

시판되는 우리나라 식품 중 영양표시를 본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본 경험이 있는 경우는 58.8%, 없는 경우는 41.1%였고 수입식품 중에서는 본 경험이 있는 경우는 53.3%, 없는 경우는 47.0%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부 식품제조회사에서만 영양표시를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이에 대한 영양교육도 전무한 상태여서 소비자들의 인지도는 저조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1975년 영양표시제도가 도입된 이래 모든 가공식품의 영양표시가 의무화 되어 있는

미국의 경우, FDA 연구 결과에 의하면 소비자의 74%가 식품구입시 제품포장의 영양정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sup>29)</sup> 영양표시 이용정도가 아닌 단지 영양표시를 본 경험이 58.8%에 불과한 본 조사결과와는 큰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영양표시제도가 실시된 역사나 범 국가적인 영양교육 노력, 국민들의 기본 영양지식 등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 2) 식품구입 시 주의 깊게 보는 영양성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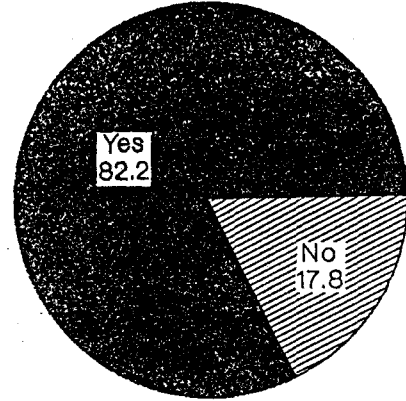
영양표시를 본 경험이 있는 경우, 가장 주의깊게 보는 영양성분은 우리나라 식품의 경우는 총열량(17.7%) > Ca(14.7%) > 총단백질량(11.8%) > Vit C(10.6%) > Fe(8.7%) > 총지방량(8.2%) > 총콜레스테롤량(8.1%) > Vit.A

**Table 5.** Awareness of Nutrition Labeling n(%)

Experience of having seen nutrition labeling		
	national products	imported products
Yes	246 (58.5)	202 (53.0)
No	172 (41.1)	179 (47.0)
Nutrients that consumers mostly pay attention to <sup>a)</sup>		
Calorie	224 (17.7)	220 (20.4)
Ca	187 (14.7)	104 (10.6)
Protein	150 (11.8)	86 ( 8.8)
Vitamin C	135 (10.6)	85 ( 8.6)
Fe	110 ( 8.7)	70 ( 7.1)
Fat	104 ( 8.2)	108 (11.0)
Cholesterol	103 ( 8.1)	121 (12.3)
Vitamin A	68 ( 5.4)	49 ( 5.0)
Salt	65 ( 5.1)	63 ( 6.4)
Carbohydrate	45 ( 3.5)	38 ( 3.9)
Vitamin B	43 ( 3.4)	32 ( 3.2)
Others	34 ( 2.7)	26 ( 2.6)
Experience of having difficulties due to mislabeling		
Yes		15 ( 3.7)
No		386 (96.3)
Ways of nutrition labeling that consumers want <sup>a)</sup>		
Total nutrient content		271 (33.5)
Notable statement by subjects		231 (28.5)
RDA percentage		161 (20.7)
Notable statement for fortification		140 (17.3)
Nutrients that should be included in nutrition labeling <sup>a)</sup>		
Calorie		328 (26.6)
Mineral		218 (17.7)
Cholesterol		161 (13.1)
Protein		137 (11.1)
Vitamin		120 ( 9.7)
Fat		102 ( 8.3)
Salt		90 ( 7.3)
Fatty Acids		53 ( 4.3)
Carbohydrate		22 ( 1.8)
Acceptance of price rise with nutrition labeling		
Yes		246 (58.5)
No		174 (41.4)

<sup>a)</sup>Frequencies are based on multiple response

(5.4%)>총염분량(5.1%)>총탄수화물량(3.5%)>Vit.B군(3.4%)의 순으로 나타났고, 수입식품의 경우는 총열량(20.4%)>총콜레스테롤량(12.3%)>총지방량(11.0%)>Ca(10.6%)>총단백질량(8.8%)>Vit.C(8.6%)>Fe(7.1%)>총염분량(6.4%)>Vit.A(5.0%)>총탄수화물량(3.9%)>



**Fig. 2.** Need for nutrition labeling

Vit.B군(3.2%)>기타(2.6%)의 순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관심이 국산제품의 경우 염분이나 비타민 등의 영양 성분 보다는 열량, 단백질 함량에 더 관심이 많고 수입식품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열량과 콜레스테롤 함량에 관심이 많은 것을 보여주었다. 이같은 결과는 국내제품의 경우 총지방량이나 콜레스테롤의 함량을 표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현실의 반영일 수도 있다고 사료된다.

3) 영양표시제도 시행의 필요성

Fig. 2에서 보듯이 영양표시제도의 시행은 82.2%가 필요하다고 한 반면 17.8% 만이 필요없다고 응답하였다. 사회, 경제적 여건에 따른 영양표시제도 시행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검증하였으나 모두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소비자의 대부분이 성별, 연령, 수입, 학력, 결혼 여부 등의 여건에 관계없이 영양표시제도의 시행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영양표시 미비로 인한 피해경험

영양표시의 미비로 인한 피해경험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3.7% 만이 피해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예로는 제품당 열량표시가 없어 과잉으로 에너지를 섭취하였다, 만성질환이나 약 복용 시 금기식품 또는 금기 영양소 선택의 어려움이 있다, 다이어트 식이에서 열량 계산의 혼란이 온다 등이 있었다.

앞에서 대다수의 소비자가 영양표시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피해경험이 극소수인 것은 영양표시의 미비로 인한 피해의 결과가 실생활에서 직접적인 피해로 인지되지 않고 그 피해효과도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5) 영양표시제도 시행 시 원하는 표기방법과 영양소

영양표시제도 시행 시 원하는 표기방법은 영양소별 총함량표기가 33.5%, 특정대상별 표기가 28.5%, 일일 권장량에 대한 백분율로가 20.7%, 특정영양성분의 침



가나 삭제의 강조문구가 17.3% 순으로 나타났으며, 반드시 표기하여야 할 영양성분으로는 총열량이 26.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Fe 및 Ca의 무기질양(17.7%) > 총콜레스테롤양(13.1%) > 총단백질양(11.1%) > Vitamin의 양(9.7%) > 총지방량(8.3%) > 총염분량(7.3%) > 지방산의 종류 및 양(4.3%) > 총탄수화물량(1.8%)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영양표시제도가 초기에는 소비자의 경제적 불이익을 없애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었으나 점차 건강상의 위협을 없애기 위한 방향으로 전개되어 Freimuth 등의 연구<sup>31,32)</sup>에서는 소비자들이 전반적인 식사 패턴의 변화 및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련하여, 점차 식품의 소금, 첨가물, 콜레스테롤, 열량 및 식섬유의 함량에 관하여 알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고, 새로운 규정에서도 지방에서 오는 칼로리량, 포화지방산, 콜레스테롤, 당류, 식이섬유소 등의 영양소가 더 추가되는 반면 티아민,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등은 그 중요성이 감소, 임의항목으로 조정되기도 했다<sup>30)</sup>.

또 정혜량은<sup>5)</sup> 미국 소비자들은 자체 영양소함량보다는 강조문구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인용하였고, 일본에서는 현재 보사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특별용도식품으로 감염식, 당뇨병식, 간장병식, 성인병비만증식, 조제용 혼합식품의 환자용으로 표시하거나 대상에 따라 입산부, 수유부용, 유아용, 고령자용 등으로 표시하여 판매되고 있다<sup>5)</sup>.

본 연구결과 원하는 표기방법에서 총합량표기와 특정대상별표기는 외국의 연구결과와 비슷하였으나 총염분양 및 총지방량 등의 표기요구는 아직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 역시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영양지식이 낮고 식품회사의 영양표시제도 이행도가 낮아 영양표시제도가 영양교육도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6) 영양성분표시 제도 시행 시 가격상승 수용여부  
영양성분표시 시행시 소비자들은 가격이 인상되더

라도 이를 기꺼이 받아들일겠다는 경우가 58.5%, 아닌 경우가 41.1%로 나타났다. 만약 기꺼이 받아들일겠다는 경우 그 수용폭은 현 식품가격의 3% 미만인 61.3%, 5% 미만인 25.2%, 10% 미만인 5.2%이었고 20% 미만이 0.3%로서 86.5%의 소비자가 영양표시제도를 위해 5% 미만의 가격상승을 감수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영양정보를 얻기 위하여 식품비의 지출을 늘일 용의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7) 영양표시제도 시행 시 기대되는 긍정적인 효과  
영양표시제도가 시행될 때 소비자가 기대하는 긍정적인 효과로 4가지 문항을 제시하여 5-point Likert Scale을 이용하여 조사한 결과를 Fig. 3에 제시하였다. 평균점수는 3.59/5점으로 현행 식품표시제도에 대한 만족도 3.15/5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문항별로는 「성인병예방, 식이요법 등 자신의 건강에 필요한 올바른 식품선택이 용이하다」가 3.80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식품구입시 타제품과 쉽게 비교된다」는 3.59점, 「제품의 질이 향상된다」가 3.58점, 「영양지식이 향상된다」가 3.40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영양표시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면 건강유지면이나 식품구입면이나 영양지식 등의 면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건강유지와 관련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식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하였다.

Queen Margret 연구에<sup>13)</sup> 의하면 식품영양표시 시행 시 특수한 환경에 처한 조사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식품과 사용해서는 안되는 식품의 구별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었다고 하였으며, 과반수 이상이 labeling을 설탕, 소금, 지방, 방부제 같은 내용물 섭취를 피하는데 이용하였다고 했고, 메뉴를 정하는데 있어서 보다는 경쟁제품과 상호비교하는데 더 유용했다고 보고하였다.

또 FDA는 식품표시규정을 실행하는데 드는 비용과

	1	2	3	4	5
1. Easier comparison				3.59 <sup>a)</sup>	
2. Easier food choice for health				3.8	
3. Improve nutrition knowledge				3.40	
4. Improve product quality				3.58	

a) Values are average points based on the 5-point Likert Scale (1: Strongly disagree, 2: Disagree, 3: Uncertain, 4: Agree, 5: Strongly agree)

Fig. 3. Positive effects with nutrition labeling

Table 6. Expected Positive Effects with Nutrition Labeling

Factors		1 <sup>a)</sup>	2	3	4
Age	<40 Yrs	3.59±0.86 <sup>b)</sup>	3.79±0.97	3.36±0.92	3.57±0.95
	≥40 Yrs	3.59±0.91	3.89±0.89	3.65±0.82	3.65±0.94
	t-value	0.01	0.77	2.25*	0.61
Marital Status	Not Married	3.70±0.76	3.93±0.95	3.44±0.90	3.69±0.94
	Marrried	3.47±0.95	3.70±0.94	3.37±0.91	3.48±0.94
	t-value	2.69*	2.43**	0.87	2.28*

<sup>a)</sup> 1. Easy to compare with other products, 2. Easy to choose correct products for health, 3. Improve the nutrition knowledge, 4. Improve the product quality

<sup>b)</sup> mean±S.D \* $p<0.05$ , \*\* $p<0.01$ , \*\*\* $p<0.001$

시행 후 잊점을 계산하기는 어려운 일이나 만성질환 중 심장병과 암의 경우 식품표시상의 영양정보에 따라 식품구매패턴을 바꾼 사람의 수를 평가한 결과 39200건의 심장병 발생을 방지하고 12000건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고, 이것은 건강치료비용 44억~220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sup>30)</sup>.

Table 6에서 보듯이 영양표시제도 시행 후 소비자가 기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성별, 연령, 학력, 수입, 직업유무, 그리고 결혼여부 등의 경제사회적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t-test를 이용하여 검증하여 본 결과 거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기대효과 값에 큰 차이를 볼 수 없었다. 다만 미혼인 경우 기혼에 비해 「식품구입 시 타제품과 쉽게 비교된다(3.70 vs 3.47;  $p<0.05$ )」, 「성인병 예방, 식이요법 등 자신의 건강에 올바른 식품선택이 용이하다(3.93 vs 3.70;  $p<0.01$ )」, 「제품의 질이 향상된다(3.69 vs 3.48;  $p<0.05$ )」 등의 항목에 더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40세 이전의 소비자보다는 40세 이후의 소비자에게서 영양표시제도가 시행되면 「영양지식이 향상될 것이다(3.36 vs 3.65;  $p<0.05$ )」라고 기대하는 경향이 더 높았다.

#### 8) 영양표시제도 시행 시 우려되는 점

Fig. 4에서 보듯이 영양성분표시제도를 시행할 경우 우려되는 점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효과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5문항을 제시하여 소비자들에게 문의한 결과 「관리 및 규제상의 어려움」이 3.06/5점으로 가장 높았고 「표시의 오류 및 잘못적용」이 2.92점, 「표시 내용의 불신」이 2.88점, 「적극적으로 이용되지 못함」이 2.72점이었고, 「식품가격인상으로 기회이용 저하」는 2.58점으로 가장 낮았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2.83/5점으로 영양표시제도가 시행될 때의 부정적인 효과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와 그저 그렇다의 사이에 위치한 값으로서 평균적으로 볼 때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편으로 나타났고 긍정적인 기대효과 점수인 3.59/5와

비교해 볼 때 유의적으로 낮아( $p<0.001$ ) 영양표시제도는 전면적으로 시행될 때 식품소비 관련 행동에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리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Herbert의 연구를 보면<sup>33)</sup> 국민의 영양지식의 보급이 뒤따르지 못할 때 영양성분표시는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이는 자사제품에 함유된 특정영양소나 그것의 건강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만을 강조할 뿐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들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여 영양표시제도 시행과 함께 적절한 영양교육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 Lenahan의 연구에서는<sup>34)</sup> 저소득층 소비자들에게 있어 표기체제가 너무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고<sup>35)</sup>, 고소득층 소비자 역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보다 단순하게 표기되기를 바란다고 보고하기도 하여<sup>36)</sup> 영양표시제도 표기 방법에 대한 많은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시사하였다.

소비자의 성별, 나이, 수입, 직업, 결혼여부 등의 사회, 경제적 여건에 따라 영양표시제도 시행이 초래할 수도 있는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으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IV. 결 론

본 연구는 영양표시제도 시행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현행 식품표시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조사하고 영양표시제도의 전면적인 실시에 대한 요구도, 기대효과, 수용정도, 실시방법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 영양표시제도 정착에 도움이 되고 정부의 정책 입안자나 식품제조업자들에게도 유용한 정보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1. 69.2%의 소비자들이 식품구입 시 현행식품표시를

	1	2	3	4	5
1. Loss of availability due to price			2.58 <sup>a)</sup>		
2. Less general use			2.72		
3. Mislabeling and misapplication			2.92		
4. Lack of confidence in labeling			2.88		
5. Difficulties in regulation and management			3.06		

a): Values are average points based on the 5-point Likert Scale (1: Strongly disagree, 2: Disagree, 3: Uncertain 4: Agree, 5: Strongly agree)

Fig. 4. The negative effects with nutrition labeling

확인하고 있었고 그 이유는 안정성확인>영양정보>메뉴에 적당한 식품선택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혼일수록, 젊을수록 영양정보를 얻는데 더 관심이 많았고 나이가 많은 층일수록, 기혼일수록 안정성에 더 큰 관심을 보였으며 고학력 층일수록 영양정보를 얻고자 식품표시를 확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식품표시 확인사항은 유통기한>제조회사명>가격>주성분>보관방법>첨가물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2. 현 식품표시에 대한 만족도는 3.15/5로서 그다지 높지 않았고 특히 '기재사항을 믿는다'는 3.03점, '알고 싶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2.93점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여 현행제도로서는 다양한 소비자 욕구와 권리가 채워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이 높을수록, 직업이 없는 경우에 표시내용을 더 많이 이해하고 있었고, 기혼자거나 30대, 40대 주부의 경우에 표시내용이 적용이 된다고 더 많이 대답하였으며, 여성 응답자에서, 미혼인 경우 제공되는 정보가 부족하여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시판되는 식품 중 영양성분표시를 본 경험은 58.8%에 불과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영양표시제도가 일부 식품에만 자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때 문인 것으로 보인다. 주의 깊게 본 영양성분은 총열량>칼슘>단백질량>Vit.C 등의 순서였다.

4. 82.2%의 소비자가 영양표시제도 시행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시행요구는 조사대상자의 수입, 연령, 학력, 직업,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원하는 표기방법은 영양소별 함량표기>특정대상별표기>권장량에 대한 백분율표기>특정영양소 첨가, 삭제의 강조 문구 표기의 순서였고 반드시 표시되어야 할 내용은 열량>무기질량>콜레스테롤량>단백질량>비타민량>지방량>염분량>지방산의 종류>탄수화물량의 순서로

서 열량과 무기질량, 콜레스테롤에 주로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영양표시제도를 시행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는 긍정적인 면이 3.59/5로 현 식품표시제도에 대한 만족도 3.15/5에 비해 비교적 높았고 부정적인 면은 2.83/5로 훨씬 더 낮았다. 문항별로는 긍정적인 면에서 '자신의 건강유지에 필요한 식품의 선택이 용이하다'가 3.80/5로 가장 높았고 부정적인 면에서는 '관리 및 규제의 어려움'에 대한 우려가 3.06/5로 가장 높았다. 미혼인 경우에 기혼인 경우보다 더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었고 40대 이후의 응답자가 젊은 층보다 영양지식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6. 58.5%의 응답자가 영양표시제도로 인한 가격상승을 수용하겠다고 하였고 그 폭은 5% 미만인 86.5%였다.

결론적으로 응답자들은 현행 식품표시제도가 소비자들의 알고 싶은 내용을 충분히 제공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현행제도에서는 안정성확인에 가장 큰 관심을 보였다. 영양표시제도는 꼭 시행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이 요구정도는 학력이나 수입 성별 연령 등의 여건에 관계없이 동일하였다. 표기방법으로는 영양소별 함량표기요구가 가장 높았고 그 내용으로는 열량>무기질>콜레스테롤의 순이었다. 제도시행으로 인해 가격이 상승해도 수용하겠다는 태도를 보였고 시행이 되면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에서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본 조사의 대상은 여러 여건상 서울 시내 거주자에만 국한되었으므로 전국적인 소비자의 영양표시제도에 대한 인식수준 및 지식은 더 낮으리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소비자에 대한 영양정보의 제공은 시급하며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영양표시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영양표시의 내용과 틀, 영양권장량, 1인 분량, 식품분 석표의 정비 등에 대한 국가와 학회 차원의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소비자들이 우려하듯이 영양표시제도가 생산자들의 제품 차별화에만 이용되어 일부 취약한 계층의 소비자들이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않도록 관리와 규제 면에서의 방책도 강구되어야 하고 제공된 영양정보가 유용하게 여러 계층의 소비자에게 이용될 수 있도록 제도의 시행과 함께 영양교육이 학교교육이나 보건소, 신문방송 매체 등을 통하여 병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또한 현행 식품표시에 대한 인지도 및 이용정도도 바람직하지 못하고 소비자의 영양지식 수준도 미미한 상황에서 많은 영양 정보의 갑작스러운 제공으로 초래될 부작용에 대한 연구도 아울러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 Chai, B.S. Korean J. Nutrition 23(3): 187-196, 1990.
- Huh, K.B. Korean J. Nutrition 23(3): 197-207, 1990.
- 박혜련. 카톨릭대학 생활과학연구소 생활과학연구논집 11(1): 1991.
- Hall, J. International Food Ingredients 4: 22-27, 1993.
- Response Analysis, Food and knowledge: Knowledge and Beliefs, 1974.
- Kirk, T. British Food Journal 93(6): 12-15, 1991.
- Crawford, D. and Baghurst, K.I. Food Australia 42 (5): 231-233, 1990.
- Response Analysis, Inc., Food and knowledge: Knowledge and Beliefs, Part 1, March, 1974.
- Tzeggai, S. Nutrition knowledge, Food attitudes and use of nutrition labeling by black elderly consumers in Washington, DC.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49(12): 5236, 1989.
- Food Product Development, p. 68, 1972.
- Gage, J.W. Paper presented at Symposium on Nutrition in Marketing, San Francisco, May 12, 1976.
- Bacock, M.J. Burkart, A. Guthrie, H. Lichtenstein, A. and Thoroughgood, C. Appendix 7, Rutgers State University, New Jersey Agricultural Experiment Station, Bulletin 844, September 1975.
- Federal Register 38(13): 2124-2164, January 19, 1973 (Food labeling: nutrition labeling, Final rule). Federal Register 38(49): 6950-6975, March 14, 1973 (Food labeling: nutrition labeling, Final rule).
- 정해량. 국민영양 통권 158: 18-25, 1994.
- Federal Register 55(139): 29487-29517: July 19, 1990. (Food Labeling: mandatory status of nutrition labeling and nutrient content revisions, proposed rule, docket no. 90N-0135).
- Federal Register 55(139): 29476-29486: July 19, 1990. (Food Labeling: reference daily intakes and daily reference values, proposed rule, docket no. 90 N-0165).
- Morris, E.M. European Food & Drink Review, Spring, p. 77-79, 1991.
- Painter, A.A. European Food Law Review 2(4): 282-290, 1991.
- 한국식품공업협회 식품연구소, 식품규격 측면에서 본 식품위생 관리제도의 개선 방향, p. 5-7, 83-94, 1986.
- 이서래. 식품과학 15(4): 50, 1982.
- Crane, N.T., Behlen, P.M., Yetley, E.A. and Vanderveen, J.E. Nutrition Today 25(4): 28-35, July/August, 1990.
- 정도영. 가공식품 표시제도에 관한 세미나 발표논문, 한국식품공업협회, 1992.
- 노우섭. 가공식품 표시제도에 관한 세미나 발표논문, 한국식품공업협회, 1992.
- Schrayer, D.U. Food Technology 32: 42, 1978.
- Geiger, C.J. and Wyse, B.W. Journal of American Dietetic Association 91: 808-812, 1991.
- Ministry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od, Food Science Division by research surveys of Great Britain: Food Hygiene: Report on a consumer survey, 1988.
- 안숙자. 한국조리과학회지 12, 5(2): 75-90, 1989.
-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Division of Market Studies consumer studies Branch June 1993. "consumer use of the Food label".
- 정해량. 식품공업 제 120호 p. 11-55, 1993.
- Freimuth, V.S., Hammond, S.L. and Stein, J.A.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78(5): 557-561, 1988.
- Achabal, D.D., McIntyre, S.H., Bell, C.H. and Tucker, N. Journal of Retailing 83(1): 9-24, 1987.
- Herbert, V. Nutrition today 22(3) May/June: 25-30, 1987.
- Lenahan, R.J. Search Agriculture 2(15), 1972.
- Olson, D.A. The perception of nutrition and nutritional labeling in the buying decision among affluent consumer.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34: 6089-13, 1974.
- Lery, A.S., Fein, S.B. and Schucker, R.E. Food Technology 45(7): 161-121, 1991.